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12. 7. 선고 2017나55136 판결 손해배상(기)

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

제 2 민 사 부

판 결

사건 2017나55136 손해배상(기)

원고,항소인 A

피고,피항소인 1. B

2. C

3. D

4. E

5.F

6. G

7. H

8. I

9. J

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6가소485191 판결

변론종결 2017. 11. 9.

판결선고 2017. 12. 7.

주 문

- 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- 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,500,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K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

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인터넷언론 'L'를 운영하는 사람이고, 피고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'네이 버'에 게시된 원고에 대한 비판 기사에 아래와 같이 댓글을 단 사람들이다.

나. 한겨레신문사는, 원고가 참석한 'M 발기인대회' 행사 참가자들이 행사 장소 근처 고깃집에 밥값 300만 원을 안 내고 버티고 있다는 기사에 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서 위 식당 주인이 친노 종북 편향의 인물과 어울렸다는 등의 반박 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, K 08:15경 네이버에 "N"라는 제목으로 별지와 같은 기사(이하 '이 사건 기사'라고 한다)를 게재하였다.

다. 이에 피고들은 K 네이버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댓글을 각 달았다.

피고	시간	댓글 내용	
В	11:17	"뭐 이런 진상들이 다있냐. 어후, 개찌질하다"	

С	10:35	"식중독이나 걸리지 돼지들 ㅎㅎ"
D	10:00	"A ㅋㅋㅋㅋㅋ 돼지고기 사먹을 돈도 없는 백수 잉여 시키"
E	09:31	"ㅁㅊ. 쳐먹었음돈이나내라."
F	14:21	"그냥 깨끗하게 지불해라! 초잡게끔"
G	12:42	"아~ 그지 섹히들 그냥 폐지나줏으러 다니지."
Н	12:30	"600명이나모였는데 5천원씩 더모아서 주면되겠구만꼴에 대학교 수도 있는데 300만원이 뭔 큰 돈이라고 하여간 모지리들"
I	10:42	"양아치 쎄키들, , 저중에 식당 하는 세키도 있을 거야, , 지들가게 와서 손님이 저러면 바로 경찰 부르겠지, , 10세키들, , ,"
J	10:32	"ㅋㅋㅋㅋㅋㅋㅋ또라이들"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악성댓글을 각 기재하여 공연히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하였으므로, 원고에게 위 각 악성댓글 기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1,5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관련 법리

(1)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, 덕행, 명성,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 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, 그와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지만,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,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,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 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,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 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,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 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(대법원 2000. 7. 28. 선고 99다6203 판결,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6다21491, 21507 판결 등 참조). 한편,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 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 바, 여기서 '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'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,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 도 무방하고, 여기서 '진실한 사실'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 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(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0다37524, 37531 판결 등 참조).

(2)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,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, 이는 명예훼손과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(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). 그러나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된된기나 그 경위 및 배경, 글의 전체적인 취지, 구체적인 표현방법,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·객관적 타당성,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,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,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,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도3972 판결,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도1433판결, 대법원 2012. 2.23.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).

다. 판단

- (1) 피고 B, E,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- (가) 피고 B, E, F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댓글은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된 원고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일 뿐 명예훼손이 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고,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,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, 표현의 형식·횟수와 그 매체, 표현의 내용·의미·방법과 전체적인 맥락, 표현의 대상이 된 원고의 행위와 태도,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, 원고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,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

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(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3다9780 판결,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다19734 판결 참조).

- (나) 따라서 피고 B, E, F의 위 각 댓글 작성·게시행위는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,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.
- (2) 피고 C, G,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- (가) 피고 C, G, J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댓글은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된 원고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일 뿐 명예훼손이 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. 한편, 피고 C의 "돼지들", 피고 G의 "그지 섹히들", 피고 J의 "또라이들"이라는 표현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,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즉, 1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비판적인 이 사건 기사를 읽고 위 댓글을 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, 2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이사건 기사에 적시된 원고의 행위나 태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, 3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읽고 바로 댓글을 남기면서 위와 같은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, 이는 원고의 행위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위 피고들의 의견을 강조한 나머지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모욕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.
- (나) 따라서 피고 C, G, J의 위 댓글 작성· 게시행위는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어,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주장도 이유 없다.
- (2) 피고 D, H,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- (가) 피고 D, H, I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댓글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있으나,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, 이 사건 기사 내용,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, 표현의 대상이 된 원고의 행위와 태도, 위 피고들이 작성한 댓글 내용과 형식, 그리고 위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의 제반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,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,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. 한편, 피고 D의"백수 잉여 시키", 피고 H의 "모지리들", 피고 I의 "양아치 쎄키들", "10세키들"이라는 표현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,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, 1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비판적인이 사건 기사를 읽고 위 댓글을 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, 2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이사건 기사에 적시된 원고의 행위나 태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, 3 위 피고들이 이사건 기사를 읽고 바로 댓글을 남기면서 위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바, 이는 원고의 행위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위 피고들의 의견을 강조한 나머지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, 4 위 피고들이 전반적으로 원고가 한 행위를 적시하고 평가 . 비판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위와 같은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그친점 등의 제반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위 피고들이 위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모욕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.
- (나) 따라서 피고 D, H, I의 위 댓글 작성·게시행위 또한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,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

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박인식(재판장) 김상철 노서영